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11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1132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9. 16 선고 2013나160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주식회사 A

피고, 피상고인B

판결 선고2015. 1. 29.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2014. 9. 16. 선고 (청주)2013나16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포기각서와 확인서를 교환하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정산은 이 사건 공탁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상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